

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백종헌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 등의 표시·광고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(안 제13조의2).
 - 정보통신망을 통한 식품 등 표시·광고의 법률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함(제1항).
 - 법률 위반인 표시·광고의 영업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(제2항).
 - 법률 위반인 표시·광고의 경우 그 위반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(제3항).
-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모니터링 업무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3조의3).
-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이 식품에 대한 정보 제공 등과 관련하여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3조의4).
-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보통신망에서의 표시·광고 관련 유통 현황 조사, 모니터링의 기술·방법 등에 대한 연구·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3조의5).

II. 검토의견

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관련(안 제13조의2제3항)

- 안 제13조의2제3항은 모니터링 결과 정보통신망을 통한 식품 등의 표시·광고가 법률 위반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’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이는 정보통신망을 이루어지는 서비스의 법률 준수를 실효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으로, 「공인중개사법」 제18조의3제3항, 「저작권법」 제133조의제1항 등도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음.

「공인중개사법」

제18조의3(인터넷 표시·광고 모니터링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·광고가 제18조의2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.
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·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「저작권법」

제133조의2(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,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(이하 “불법복제물등”이라 한다)가 전송되는 경우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.

1. 불법복제물등의 복제·전송자에 대한 경고
2.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

그런데 법률 위반 표시·광고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하는 조치란 결국 표시·광고의 주체인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성격을 지니게 될 것임. 이처럼 침익적 성격의 조치에 대하여는 법률에 그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규정하고 그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안 제13조의2제3항은 그 조치 내용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’라고만 규정하고 있음.

-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, 해당 표시·광고가 법률 위반이라는 사실을 게시하도록 하는 조치를 대통령령에 규정할 예정임.

따라서 법률의 이해가능성 제고 및 위임 범위의 명확화를 위하여 안 제13조의2제3항에 ‘위반 사실 게시’ 등 조치의 내용을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.

개 정 안	수 정 의 건
제13조의2(식품등의 표시·광고 모니터링 등)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<u>제7조 또는 제8조에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표시·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</u> 이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	제13조의2(식품등의 표시·광고 모니터링 등)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<u>식품등의 표시·광고가 제7조 또는 제8조에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사실의 게시 등 위법·부당한 표시·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</u> 이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2. 법률 조문의 순서 관련(안 제13조의4 등)

- 안 제13조의4는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의 자율규제에 관한 규정이고, 안 제13조의5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식품 등의 표시·광고의 모니터링 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임.

법률은 그 내용과 집행 절차 등을 기준으로 하여 상호간의 관련성이 높은 조문별로 인접하게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, 안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등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표시·광고의 모니터링 및 그 업무의 위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하면, 이들 규정은 안 제13조의4보다는 안 제13조의5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.

따라서 유사한 내용을 담은 조문이 상호 인접하게 규정될 수 있도록 안 제13조의4와 안 제13조의5의 순서를 서로 바꾸도록 수정함.

3. 기타

- 기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,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.

(전문위원 이 은 정)